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8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0.

발 의 자:김민전・김기웅・박상웅

김용태 · 김종양 · 김도읍

이인선 • 이달희 • 최수진

주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, 신·편입학과 관련된 부정·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,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한편,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, 성희롱,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, 국고의 횡령, 배임 등에 대해 서는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음.

이에 교육공무원이 대학(원) 및 고등학교에 입학(대학(원)의 경우 편입학 포함)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 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고,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함(안 제52조제6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(편입학을 포함한다)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
 -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
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)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아 혂 개 정 제52조(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제52조(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)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 특례) -----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국 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의2제1 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(편입학 을 포함한다)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 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 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 위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같은 법 제29 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 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 학원대학

 나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

 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

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

 조제5호에 따른 학교